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[별표 14의2] <개정 2019. 12. 20.>

개선사유서 제출 대상 및 시기(제52조의2제1항 관련)

<table>
<tr><th colspan="3">구 분</th><th>내 용</th><th>제출시기</th></tr>
<tr><td rowspan="5">자료
수집기
및 측
정
기기</td><td rowspan="2">점검</td><td>일반 점검</td><td>· 측정기기 및 부대장비의 점검 또는 청소
· 측정기기 교정
· 단순 부품의 교체 또는 수리
(측정결과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수 있는 센서류 및 검출부의 부품은 제외)</td><td>사전</td></tr>
<tr><td>긴급점검</td><td>· 고장 발견과 간단한 수리
· 원인규명과 수리</td><td>사후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상태
정보
발생</td><td>가동중지
· 점검중</td><td>· 원인규명과 수리준비(제작업체에 의뢰)
· 수리 · 교환을 위한 부품 수급</td><td rowspan="2">사후</td></tr>
<tr><td>통신불량
동작불량</td><td>· 특정 또는 불특정 원인으로 자동발생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자동측정자료의 미수신</td><td>· 자료수집기(중간자료수집기) 점검, 전기설비 자체점검, 수전설비 보완공사, 전기안전 점검 등</td><td>사전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기타</td><td colspan="2" rowspan="2">정도 검사</td><td>· 검사를 위한 사전 준비 등</td><td rowspan="2">사전</td></tr>
<tr><td>· 정도검사 기간</td></tr>
<tr><td colspan="3">그 외 비정상 자동측정자료로 판단되는 경우(시료펌프 순간정전 후, 자동교정 후, 기타 불특정 원인으로 인한 이상 자료 및 비정상 상태정보 등)</td><td>사후</td></tr>
</table>

비고 : 개선사유서를 사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전자문서 · 팩스 또는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즉시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